【 4 】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0. 4. 7.

제 출 자 : 양주군수

□ 개정이유

○ 정부의 지방상수도 사용요금 현실화 계획과 관련하여 '99년말 현재 상수도 사용 요금에 대한 현실화율은 생산원가 대비 60.8%에 불과한 실정이며, '99년 6월 수자원공사 및 동두천시의 정수 사용료가 인상됨에 따라 매년 누증되는 재정적자의 해소 및 지나치게 낮은 요금 수준으로 인한 물낭비 심리의 개선 등을 위해 수도사용 요금을 평균 25%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현행 상수도 사용요금을 평균 25%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용은 33%, 업무용은 39%, 영업용은 16%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6조 "별표 2")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업종별 요율은 이 조례공포일 익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업종별요율표(제26조 관련)

(단위 : 톤, 원)

업 종 별	사 용 량	요 금	비 고
가 정 용	0 ~ 10	200	
	11 ~ 20	310	
	21 ~ 30	410	
	31 ~ 40	560	
	41 ~ 50	770	
	51 ~	910	
업 무 용	0 ~ 20	420	
	21 ~ 50	510	
	51 ~ 100	590	
	101 ~ 300	680	
	301 ~	780	
영 업 용	0 ~ 30	480	
	31 ~ 50	580	
	51 ~ 100	790	
	101 ~	990	
욕탕용 1종	0 ~ 200	390	
	201 ~ 300	460	
	301 ~ 500	630	
	501 ~	740	
욕탕용 2종	0 ~ 200	430	
	201 ~ 500	700	
	501 ~ 1,000	800	
	1,001 ~	1,000	
전용공업용	0 ~ 100	570	
	101 ~	790	

신·구조문대비표

(단위 : 톤, 원)

개 정 전

(별표 2)

업종별요율표(제26조관련)

업 종 별	사 용 량	요 금	비고
가 정 용	0 ~ 10	160	
	11 ~ 20	230	
	21 ~ 30	300	
	31 ~ 40	360	
	41 ~ 50	480	
	51 ~	650	
업 무 용	0 ~ 20	340	
	21 ~ 50	380	
	51 ~ 100	430	
	101 ~ 300	480	
	301 ~	555	
영 업 용	0 ~ 30	370	
	31 ~ 50	470	
	51 ~ 100	640	
	101 ~	870	
욕 탕 용 1 종	0 ~ 200	390	
	201 ~ 300	460	
	301 ~ 500	630	
	501 ~	740	
욕 탕 용 2 종	0 ~ 200	430	
	201 ~ 500	700	
	501 ~1,000	800	
	1,001 ~	1,000	
전 용 공업용	0 ~ 100	570	
	101 이상	790	

개 정 후

(별표 2)

업종별요율표(제26조관련)

업 종 별	사 용 량	요 금	비고
가 정 용	-------	200	
	-------	310	
	-------	410	
	-------	560	
	-------	770	
	------	910	
업 무 용	-------	420	
	-------	510	
	-------	590	
	-------	680	
	------	780	
영 업 용	-------	480	
	-------	580	
	-------	790	
	-------	990	
욕 탕 용 1 종	-------	---	
	-------	---	
	-------	---	
	------	---	
욕 탕 용 2 종	-------	---	
	-------	---	
	-------	---	
	------	---	
전 용 공업용	-------	---	
	------	---	

러하지 아니하다.

②主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監査請求를 受理한 날부터 60日이내에 監査請求된 사항에 대하여 監査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監査結果를 請求人의 代表者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書面으로 통지하고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監査를 종료하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請求人의 代表者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통지하고 公表하여야 한다.

③主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結果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措置結果를 地方議會와 主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20歲이상의 住民의 監査請求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第13條의3第2項 내지 第6項 및 第8項의 規定은 20歲이상의 住民의 監査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條例의 制定이나 改廢"를 "監査"로,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主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로 본다.

〔本條新設 99·8·31〕

第14條 (住民의 義務) 住民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地方自治團體의 費用을 分擔하는 義務를 진다.

第3章 條例와 規則

第15條 (條例)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 다만,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

第16條 (規則)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法令 또는 條例가 委任한 범위안에서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에 관하여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7條 (條例와 規則의 立法限界) 市·郡 및 自治區의 條例나 規則은 市·道의 條例나 規則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8條 (地方自治團體의 新設, 格의 變更時의 條例·規則의 施行) 地方自治團體가 分合하여 새로운 地方自治團體가 設置되거나 地方自治團體의 格이 變更된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條例 또는 規則이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新設 97·8·28〉

③一般水道事業者가 供給하는 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음을 발견한 者는 당해 一般水道事業者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第23條 (供給規程) 一般水道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돗물의 料金, 給水裝置에 관한 工事의 費用負擔 기타 수돗물의 供給條件에 관한 規程을 정하여 수돗물의 供給을 開始하기 전까지 認可官廳(廣域上水道의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을 말한다. 이하 第48條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水道事業者가 地方自治團體인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4·8·3, 97·8·28〉

第24條 (給水義務) ①一般水道事業者는 정당한 이유없이 수돗물의 供給을 원하는 者에 대하여 그 供給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4·8·3〉

②一般水道事業者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일시 수돗물을 供給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區域 및 기간을 정하여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4·8·3〉

第25條 (管轄區域외의 給水) 環境部長官은 一般需要者의 便益增進 기타 公益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行政自治部長官과 協議하여 水道事業者인 地方自治團體로 하여금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외의 地域에 물을 供給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4·8·3, 97·8·28, 99·2·8 法5875〉

第26條 (緊急給水支援) ①市·道知事는 天災·地變 기타의 非常시에 긴급히 수돗물을 供給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水道事業者에 대하여 기간·水量 및 방법을 정하여 수돗물을 다른 水道事業者에게 供給하게 할 수 있다. 다만, 水道事業者가 市·道知事인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이 이를 명한다. 〈改正 94·8·3, 97·8·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供給하는 수돗물의 料金은 관계水道事業者간의 協議에 의하여 정한다. 〈改正 94·8·3〉

③관계水道事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④管轄土地收用委員會의 裁決이 있는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第27條 (사업의 廢止 또는 休止) ①一般水道事業者는 수돗물의 供給을 開始한 후에는 당해 一般水道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廢止하거나 休止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認可官廳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12·27, 94·8·3〉

②削除 〈97·8·28〉

第28條 (國家가 設置하는 水道의 特例) ①環境部長官 또는 建設交通部長官은 一般

양주군수도급수조례

[1970. 4. 6
조례 제199호]

개정 1971. 4.15 조례 제 225호
〃 1971. 5. 1 조례 제 286호
〃 1972. 5.20 조례 제 321호
〃 1976. 4.27 조례 제 456호
〃 1976.12.31 조례 제 476호
〃 1979. 5. 4 조례 제 631호
〃 1979. 8. 1 조례 제 639호
〃 1980. 3.11 조례 제 662호
〃 1980. 5.23 조례 제 678호
〃 1980. 7.10 조례 제 707호
〃 1980.12.31 조례 제 725호
〃 1981.10.16 조례 제 764호
〃 1982. 1. 1 조례 제 770호
〃 1983. 8. 8 조례 제 909호
〃 1983.11.28 조례 제 913호
〃 1984. 1.17 조례 제 916호
〃 1985. 1.28 조례 제1018호
개정 1985. 7. 1 조례 제1037호
〃 1985. 7.26 조례 제1042호
〃 1985. 9.30 조례 제1073호
〃 1986. 3.20 조례 제1112호
〃 1986. 8.20 조례 제1118호
〃 1987. 5.21 조례 제1160호
〃 1988.11. 3 조례 제1226호
〃 1989. 3. 9 조례 제1250호
〃 1989. 3.31 조례 제1254호
〃 1989. 6.21 조례 제1275호
〃 1991. 1. 1 조례 제1361호
〃 1992.11.16 조례 제1436호
〃 1994. 6.22 조례 제1497호
〃 1995.10.16 조례 제1547호
〃 1997.12.31 조례 제1662호
〃 1998. 4.20 조례 제1674호
〃 1999. 2.13 조례 제170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과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 중지를 한 경우 수도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하나 구경별 정액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의거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 주택의 경우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가. 수도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다. 제2항에 의한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라.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마.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 4 장 요금과 수수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수도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이하 "요금"이라 한다) 수도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요금은 별표 제2호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호에 의한 업종 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 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다만, 높은 요율의 업

(별표 2)

업 종 별 요 율 표 (제26조 관련)

(단위 : 톤, 원)

업 종 별	사 용 량	요 금	비 고
가 정 용	0 ~ 10	160	
	11 ~ 20	230	
	21 ~ 30	300	
	31 ~ 40	360	
	41 ~ 50	480	
	51 ~	650	
업 무 용	0 ~ 20	340	
	21 ~ 50	380	
	51 ~ 100	430	
	101 ~ 300	480	
	301 ~	555	
영 업 용	0 ~ 30	370	
	31 ~ 50	470	
	51 ~ 100	640	
	101~	870	
욕 탕 용 1 종	0 ~ 200	390	
	201 ~ 300	460	
	301 ~ 500	630	
	501~	740	
욕 탕 용 2 종	0 ~ 200	430	
	201 ~ 500	700	
	501 ~ 1,000	800	
	1001 ~	1,000	
전 용 공 업 용	0 ~ 100	570	
	101 이상	790	

(추 3)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

□ **개정구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정부의 지방상수도 사용요금 현실화 계획과 관련하여 '99년말 현재 상수도사용요금에 대한 현실화율은 생산원가 대비 60.8%에 불과한 실정이며 '99년 6월 수자원공사 및 동두천시의 정수사용료가 인상됨에 따라 매년 누증되는 재정적자의 해소 및 지나치게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한 물낭비 심리의 개선등을 위해 수도사용요금을 평균 25%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현행 상수도사용요금을 평균25%인상하는 것으로 가정용은 33%, 업무용은 39%, 영업용은 16%수준으로 상향조정함(안26조 별표2).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자치법 제15조

○ 수도법 제23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2000. 3. 13 ~ 3. 31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현행조례